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455600 · 17진정0455700(병합) 의무복무 중 사고자 형제에 대한 과도한 징집

진 정 인 1. ○○○
2. ○○○
3. ○○○
4. ○○○
5. ○○○
6. ○○○

피진정인 병무청장

주 문

1. 국회의장에게, 병역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17진정0455600 진정사건(이하 '진정사건 1'이라 한다)

진정인 1의 큰 아들은 2012. 5. 23. 육군 0사단에서 의문사를 당하였고, 군의 귀책사유로 순직결정을 받았다. 진정인 1의 둘째 아들인 진정인 2는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현재 진정인 1, 2는 모두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국가가 진정인 2에게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 진정인 2의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

나. 17진정0455700 진정사건(이하 '진정사건 2'라 한다)

진정인 3의 셋째 아들인 진정인 6은 2014. 6. 30. 군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6은 자대 배치된 날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2015. 1. 23. 현역부적합자로 판정받고 전역하였다. 진정인 6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후유증으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인 3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인데, 위 사고로 인해 파탄이 났다. 진정인 3의 둘째 아들인 진정인 5는 진정인 6과 관련한 재판을 돕기 위해 군과 접촉하면서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진정인 5가 병역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병역법」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하 '전공사상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1명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병역법시행령」제13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전공사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할 때 군인으로서 신분에 차이가 없더라도 직무의 위험도, 국가 공헌도, 보호의 필요성 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체육·질병 등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활동 중 사망·상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 것을 볼 때 직무수행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국민개병주의 하에서 병역의무 감면은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보호의 필요성, 평등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 병역의무는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병역우대조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현역병 입영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4)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청구(0000헌마000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4항 위헌 확인)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사용 진단서, 판결문(진정사건 1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담확인서, 관계기관(국가보훈처)의 사실조회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인 1은 군에서 사망한 ○○○과 진정인 2의 어머니이다. 진정인 1의 첫째 아들인 ○○○은 2012. 1. 17. 입대하여 2012. 3. 12. 제0보병사단 00연대 0대대 0중대로 전입하여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2012. 7. 27. 대기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에서 예광탄 3발이 격발되어 턱 밑부분에서 후두부 방향으로 두부 관통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제0보병사단 보통검찰부 소속 담당검찰관은 2012. 9. 28. ○○○의 사망에 대하여 타살가능성, 총기오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은 전·공상 심의 의결 결과「군인사법」상 순직자로 인정되었고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인으로 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2) 진정인 1은 총기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2013. 12. 30. 국방부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일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진정인 1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2017. 3.경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진정인 1의 둘째 아들인 진정인 2는 2017. 6. 21.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2017. 12. 1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5급'으로 전시근로역을 처분 받았다.

4) 진정인 2의 병사용 진단서(2017. 6. 12. ○○○○○의원 발행)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3년 8월에 등교 거부,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습니다. 2012년 형이 군대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후 모의 우울증과 함께 환자도 우울감, 상실감, 좌절감에 힘들어하면서 애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적절한 치료 없이 군 입대 하였을 경우 타해, 자해, 탈영, 총기사고 등의 돌발적인 사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군대 적응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서, 소견서(진정인 3), 진단서(진정인 6), 판결문(○○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0000고단0000판결), 보훈보상대상자증, 징계의결기록, 군복무기록,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전·공상 심의 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인 3은 진정인 4, 5, 6의 어머니이다. 진정인 3의 막내아들인 진정인 6은 2013. 11. 14.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 6은 2014. 9. 24. 제00보병사단 ○○○지원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2014. 9. 25. 같은 지원대 병장이었던 ○○○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죽은 매미를 먹으라고 강요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 6은 치료일수 불상의 불안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 3. 제2국민역으로 전역하였다.

2) 진정인 6은 2015. 1. 30. 전·공상 심의 의결 결과 공상자로 처리되었고, 2016. 12. 16. 재해부상군인 6급2항(정신장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3) 진정인 5는 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군 입대를 연기한 상태이다.

4) 진정인 3은 진정인 6의 군대 내 사고 이후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아 왔고 대상포진 등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6. 판 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에 대해 병역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유가족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져오므로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가족 중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는데, 그 순직자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2조 제3항). 즉, 모법인 「병역법」은 병역감면의 정도를 보충역으로 정하고 있고, 「병역법시행령」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법의 위임을 받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4항 제1호는 순직자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 재해부상군인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사망한 군인이 「군인사법」에 따른 순직자 또는 공상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 또는 재해부상군인으로 등록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그 가족은 병역을 감면받을 수 없다.

진정사건 1과 관련하여 ○○○은 순직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사건 2와 관련하여 진정인 6은 공상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인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 의하면 진정인 2와 진정인 5는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병역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병역감면의 정도 내지 수준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의 진정 취지는 현역 복무를 보충역으로 감경하는 것 이외에도 군 복무의 면제를 포함하여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므로 「병역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의견 표명의 필요성

1) 징병제에 있어 국가의 책임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징병제를 취하고 있다.

아래 <표 1>과 같이 군 간부 및 병사 등 군인 전체를 통틀어 매년 80-90여명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살, 총기 등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사망사고 중에서는 위 진정사건 1의 사례와 같이 유가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군 복무 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진정사건 2의 사례와 같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적 외상을 입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후유증이 미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징병제 하에서 군에 징집되어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병사들이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는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가족에 대해서 병역감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이자 형평성에 맞는 대우라고 볼 수 있다.

표 1. <군 사망사고 현황[1]>(단위: 명)

구분	계	자살	총기	안전사고 (차량, 익사 등)	기타
2014	101	67	5	25	4
2015	93	57	0	28	8
2016	81	54	0	24	3

2) 병역자원에 미치는 영향

현행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병역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군인의 유가족에게 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9. 29.자 2004헌마804 결정).

그러나 아래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운데 일부만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많지 않다. 따라서 군인이 의무복무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그 형제 등이 병역

1)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9., 34면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표 2. <최근 3년간 전역연도 의무복무자 신규 등록현황>[2](단위: 명)

전역연도	대상구분	합계	2014년 등록	2015년 등록	2016년 등록
2014년	**합계**	235	29	157	49
	순직군인[3]	**9**	**3**	**6**	
	공상군인	60	9	40	11
	재해사망군인[4]	**30**	**5**	**24**	1
	재해부상군인	136	12	87	37
2015년	**합계**	194		29	165
	순직군인	**9**		**6**	**3**
	공상군인	59		9	50
	재해사망군인	**12**		**6**	**6**
	재해부상군인	114		8	106
2016년	**합계**	46			**46**
	순직군인	**3**			**3**
	공상군인	13			13
	재해사망군인	**7**			**7**
	재해부상군인	23			23

※ 의무복무자 추출기준 : 계급이 이등병~병장인 등록자

해석례) 2014년도에 사망(동시에 전역)한 의무복무자 중 2014년도에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인으로 등록된 군인은 3명, 2015년에 등록된 군인은 6명에 해당함.

해석례) 2015년도에 사망(동시에 전역)한 의무복무자 중 2015년도에 보훈보상자법 상 재해사망군인으로 등록된 군인은 6명, 2016년도에 등록된 군인은 3명에 해당함.

피진정인은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형제 등이 유가족마다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고, 유가족 중 1명에 한하여 병역을 감면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

2) 국가보훈처 제공
3)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인을 의미함.
4) 보훈보상자법 상 재해사망군인을 의미함.

공자법」상 순직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 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적용 대상자는 매년 군인 사망자 수인 평균 80-90명에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년 최소 110,00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과 0.07%에 비율로서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병역자원의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신적 외상 악화 방지 필요

군 의무복무 중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당한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유가족들은 정상적인 애도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거나 애도의 초기 단계에 장기간 고착되기도 한다. 자살처리 사건의 경우 유가족은 군 수사나 장례 과정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홀대 당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받지 못한 것, 그리고 가정경제나 불화 등을 자살의 원인으로 공표한 군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5].

위 진정사건을 보더라도 진정인 2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의 이상으로 인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정인 2는 형인 ○○○이 군에서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실로 인해 사춘기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유가족의 군 복무는

5) 김호철,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 7., 61면

그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사고 이후 그 가족들이 경험해야 할 고통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인 1은 첫째 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서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일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 받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진정인 3은 막내아들인 진정인 6의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대상포진 등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정인 3은 진정인 6이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배려 없이는 스스로 극복하고 감당해 내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에 간 형제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가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표명

국가는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가족이 겪는 정신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고, 최소한 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병역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당장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78호)과 순직자의 유가족 중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전시근로역 선택권을 부여하며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병역감면의 정도를 모두 확대하고자 하는「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80호)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2017. 6. 26. 김종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별지 2, 3 참조). 위 발의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면 수준이 보충역에서 한 단계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사법」및「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법률 제10504호)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440호)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별지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8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0

발의연월일 : 2017. 6. 26.

발 의 자 : 김종대.심상정.윤소하노회찬.추혜선.이정미이철희.신경민.김해영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임. 사망한 병사의 형제 또는 자(子)가 의무복무대상자인 경우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이를 입은 사람의 형제 또는 자(子) 역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군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병사를 제외한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3조).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을 “전상·공상”으로 한다.

2. 현역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자(子) 또는 형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7급 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자(子) 또는 형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62조제1항제1호”를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2조제1항제2호”를 “제6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근로역 편입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현역 복무 중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 편입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제1호 또는 제2호----------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의무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자(子) 또는 형제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7급 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자(子) 또는 형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상·공상----------.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②----------제62조제1항제3호----------.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	③ ----------제62조제1항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또는 제2호---------- ---------- ---------- ----.

별지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78

발의연월일 : 2017. 6. 26.

발 의 자 : 김종대、김용득、심상정
윤소하、노회찬、이정미
추혜선、이철희、심재권
신경민、김병기、김해영
진선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그런데 실제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5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로 인하여”를 “경우로서”로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및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불복 절차)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순직자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단서 신설>	다. ---------- ---------- ---------- ---------- ---------- ----------. 다만,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및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3. 일반사망자 ----------경우로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4(불복 절차)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